

창원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19가단1026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최용환, 권지혜, 정찬우, 손수연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9. 2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2. 1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77,175,67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2. 19. C와 사이에서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77,175,67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2. 1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2. 19. C와 사이에서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9. 2. 13. 창원지방법원에 ‘2013. 10.경 C에게 합계 28,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2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창원지방법원 2019가소1463)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19. ‘C은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은 2020. 5. 13.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4. 22.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0나56107).

C의 추완항소가 각하됨에 따라 위 1심 판결은 2020. 4. 21.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1) C은 2017년 창원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7가단6934), 위 법원은 2018. 2. 8. ‘D은 C에게 79,000,000원과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D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8나1043), 항소심 법원은 2018. 12. 13.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 3. 확정되었다.

2) C은 2019. 2. 19.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같은 날 D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6호증, 을 1, 2, 3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그 채권의 일부는 D의 대위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룰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원고가 C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수익자인 피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원고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룰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에 대한 추정을 반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1. 8. 24.을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채권의 원리금은 77,175,671원[= 28,000,000원 + 49,175,671원(= 28,000,000원 × 연 24% × (7 + 116/365), 2014. 5. 1.부터 2021. 8. 24.까지)]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인 77,175,67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이를 그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1186, 2011다71193(병합)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제3채무자인 D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이 77,175,67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